

병 무 청 과 그 소 속 기 관 직 제 시 행 규 칙
일 부 개 정 령 안

2020. 7. .

병 무 청
()

법 제 처 심 사 전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병역판정검사의 정확도를 향상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병무청 소속기관에 의료장비 운영에 필요한 임기제 인력 1명(8급 1명)을 증원하고,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정원 64명(5급 3명, 6급 16명, 7급 23명, 8급 22명)에 대한 존속기간을 2020년 8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8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한편,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병무청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5명(8급1명, 9급 4명)을 행정직군 정원 2명(9급 2명) 및 기술직군 정원 3명(8급 1명, 9급 2명)으로 각각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0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00.00~00.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4항 단서 중 “4명”을 “5명”으로 한다.

국방부령 제934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 중 “2020년 8월 31일”을 “2022년 8월 31일”로, “2020년 9월 1일”을 “2022년 9월 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020년 8월 31일”을 “2022년 8월 31일”로, “2020년 9월 1일”을 “2022년 9월 1일”로 한다.

국방부령 제1003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4명”을 “3명”으로, “2명”을 “1명”으로 하고, 제3조 중 “2020년 8월 31일”을 “2022년 8월 31일”로, “2020년 9월 1일”을 “2022년 9월 1일”로 한다.

별표 4 중 행정서기보 “1”을 “2”로 하고, “사무운영서기보 1”을 삭제한다.

별표 6 중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7”을 “8”로 하고, 행정서기보 “274”를 “275”로 하며, 공업서기보 “5”를 “7”로 하고, 열관리운영서기 “2”를 “1”로 하며, 열관리운영서기보 “4”를 “2”로 하고, 사무운영서기보 “28”을 “27”로 한다.

별표 6의2 중 총계 “1,495”를 “1,496”으로 하고,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일반직 계 “1,485”를 각각 “1,486”으로 하며,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7”을 “8”로 하고, 의료기술서기 “13”을 “14”로 하며, 행정서기보 “256”을 “257”로 하고, 공업서기보 “5”를 “7”로 하며, 열관리운영

서기 “2”를 “1”로 하고, 열관리운영서기보 “4”를 “2”로 하며, 사무운영서기보 “28”을 “27”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6의2의 정원 2명(의료기술서기 2명)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5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③ (생략)	제45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③ (헌행과 같음)
④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④ ----- ----- ----- ----- ----- ----- ----- ----- ----- ----- ----- ----- ----- -----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의2와 같으며, 별표 6의2의 정원 중 8급 <u>4명</u> 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 ----- ----- ----- ----- ----- ----- ----- ----- ----- ----- ----- ----- ----- -----
⑤ ~ ⑦ (생략)	⑤ ~ ⑦ (헌행과 같음)
국방부령 제934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국방부령 제934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생략)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헌행과 같음)

② 별표 3의2에 따른 정원 중 9명(행정사무관 3명, 행정주사 3명, 행정주사보 3명)은 2020년 8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0년 9월 1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행정주사 3명, 행정주사보 3명, 행정서기 3명으로 본다.

③ 별표 5의2에 따른 정원 중 4명(행정주사 1명, 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 2명)은 2020년 8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0년 9월 1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2명으로 본다.

④ (생략)

국방부령 제1003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종전의 국방부령 제945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원된 정원 1명(행정서기 1명)을 제외한 별표 3의2의 정원 1

② -----

----- 2022년 8월 31일----- 2022년 9월 1일 -----

--.

③ -----

----- 2022년 8월 31일----- 2022년 9월 1일 -----

-----.

④ (현행과 같음)

국방부령 제1003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

3명

1명

[illegible]

방송통신서기 1명, 행정서기보 18명, 의료기술서기보 1명, 전산 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 명으로 본다.	----- ----- ----- -----.
--	---

[별표 4]

중앙신체검사소 공무원 정원표(제45조제2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행정서기보	.		.		.	
	.		.		.	
			<u>1</u>		<u>2</u>	+1
	.		.		.	
사무운영서기보	.		.		.	
			<u>1</u>		<u>2</u>	-1

[별표 6]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 공무원 정원표
(제45조제4항 본문 및 제45조의2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u>7</u>	<u>8</u>	+1
•	•	•	
•	•	•	
행정서기보	<u>274</u>	<u>275</u>	+1
•	•	•	
•	•	•	
공업서기보	<u>5</u>	<u>7</u>	+2
•	•	•	
•	•	•	
열관리운영서기	<u>2</u>	<u>1</u>	-1
•	•	•	
•	•	•	
열관리운영서기보	<u>4</u>	<u>2</u>	-2
사무운영서기보	<u>28</u>	<u>27</u>	-1
•	•	•	
•	•	•	

[별표 6의2]

지방병무청 병무지청공무원 정원표
(제45조제4항 단서 및 제45조의2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495</u>	<u>1,496</u>	+1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은 제외한다)	<u>1,485</u>	<u>1,486</u>	+1
일반직 계	<u>1,485</u>	<u>1,486</u>	+1
.	.	.	
.	.	.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u>7</u>	<u>8</u>	+1
의료기술서기	<u>13</u>	<u>14</u>	+1
.	.	.	
.	.	.	
행정서기보	<u>256</u>	<u>257</u>	+1
.	.	.	
.	.	.	
공업서기보	<u>5</u>	<u>7</u>	+2
.	.	.	
.	.	.	
열관리운영서기	<u>2</u>	<u>1</u>	-1
.	.	.	

•	•	•	
열관리운영서기보	<u>4</u>	<u>2</u>	-2
사무운영서기보	<u>28</u>	<u>27</u>	-1
•	•	•	
•	•	•	